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 1호
2. 자산운용회사명 : 유리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 02-2168-7900)
3. 판매회사명

판매사명	주소	전화번호
굿모닝신한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 1588-0365
농협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1	☎ 1588-2100
동양증금증권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	☎ 02-3770-2000
부국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 1588-7744
부산은행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38	☎ 1588-6200
신흥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 080-7733-080
현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 1588-6611
SK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 1588-8245
키움닷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1544-9000
리딩투자증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 02-2009-7000
한화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 1544-8282
대구은행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 1588-5050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 1588-1111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 1566-2566
CJ투자증권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53-10	☎ 1588-7171
우리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 1544-0000
브릿지증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 1566-0900

※ 판매하시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성기준일 : 2007년 08월 01일
5.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 주소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유리자산운용(주)홈페이지 (www.yurieasset.co.kr)



유리자산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설명서 요약(핵심설명서)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 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주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중개회사선정기준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4. 운용자산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보증기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정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4 쪽)

- 명 칭 : 유리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 1 호
-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분 류 : 증권투자신탁, 추가형·개방형·종류형
- 자산운용회사 : 유리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4~7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전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 선물, 상품 등 각종 거래소 유관기관이 발행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장기적인 자본이득 추구
2.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세계 주요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의 주요 거래소를 당사의 자체기준에 의해 등급별로 선별, 해당종목의 투자비율을 결정하여 분산투자 효과와 함께 수익성을 제고
3. 주요 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신탁의 재산은 시장위험, 개별종목위험, 유동성위험 및 과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외화표시자산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 등에 노출 되어 있으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및 주식시장 현황은 투자설명서 본문 5~6 쪽 참조)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6 등급 중 1 등급으로 극히 매우 높음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이머징마켓 포함) 주식 등의 투자에 따른 가격변동성 위험과 환율변동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높은 위험을 감내 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 가치를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07.6.15)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최병로	44 세	본부장	17 개	1,962 억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 금융공학	해외운용 : 한국투신운용 과생운용 : 플러스자산운용 해외 및 과생 운용 : 당사 05.5 월~현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대안투자본부 담당이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임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III |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7~8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종류 A	종류 C	종류 C1	종류 I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8 항에 따른 기관 투자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 억 이상 매입한 개인 및 500 억 이상 매입한 법인	100 억 이상 매입 투자자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후판매수수료 ¹⁾ 환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없음	없음
투자신탁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운용회사보수 판매회사보수 기타보수 보수합계	연 0.700% 연 0.900% 연 0.085% 연 1.685%	연 0.700% 연 1.900% 연 0.085% 연 2.685%	연 0.700% 연 0.250% 연 0.085% 연 0.815%
		기타비용		연 0.200%	
		총보수·비용비율 ²⁾	연 1.885%	연 2.885%	연 1.015%
					연 1.235%

주 1) 선후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냄

(기타비용은 회계감사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유사펀드의 추정치임)

2. 과세 : 투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주식매매차익등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7.1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등이 비과세 됩니다.

3. 매입·환매절차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 분~오후 시 분) 중에 매입 또는 환매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 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D D+1 자금 납입 수익증권 매입 (5시이전) (D+1 기준가격 적용)			D D+1 D+2 자금 납입 수익증권 매입 (5시이후) (D+2 기준가격 적용)			
환 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8 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9 영업일(D+8)에 환매대금을 지급			
	D D+1 D+2 D+3 D+4 D+5 D+6 D+7 환매청구 (5시이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D D+1 D+2 D+3 D+4 D+5 D+6 D+7 D+8 환매청구 (5시이후) 기준가 적용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성명) 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 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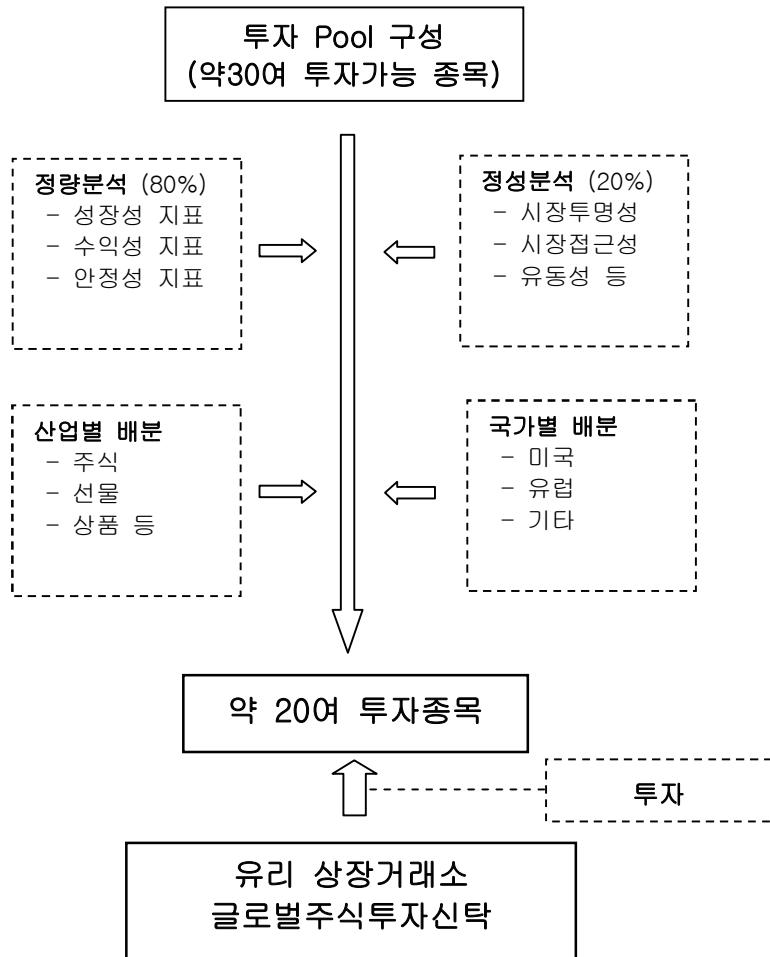
I. 투자신탁의 개요

1. 투자신탁의 명칭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분류	주식형 증권간접투자기구, 초기형, 개방형, 종류형, 해외투자형 Class A :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 C : 가입제한 없음 Class C 1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법인세법시행령제17조의2제8항 에 따른 기관투자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 매입한 개인 및 500억 이상 매입한 법인 Class I : 100억이상 매입 투자자
4. 자산운용회사	유리자산운용(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 02-2168-7900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 3. 12 최초 설정,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인하(2007/08/01) 2007. 6. 12 Class C 1 추가
6. 수탁고추이	<해당사항 없음>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③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전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 선물, 상품 등 각종 거래소와 거래소 유관기관이
발행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장기적인 자본이득의 추구를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 투자자는 외국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외국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수탁 회사 등이 투자신
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서로 다른 기준기격의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전세계 주요국가의 증권(Stocks), 선물(Futures), 상품(Commodities) 등
이 거래되는 각종 거래소(Exchange)와 거래소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관련 주식의 가치상승
에 의한 수익추구전략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전세계 주요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의 주요 거래소를 당시의 자체기준에 의해 등급별로 선별, 해당종목의 투자비
율을 결정하여 분산투자 효과와 함께 수익성을 제고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주식 등 외화표시자산에 주로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이러한 위험
을 일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회피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수행합니다. 다만, 특정지역 및 특정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 및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의 특성상 일부 외화표시자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
을 수도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 상기의 전략은 국내외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목적을 실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은 시장위험, 개별종목위험, 유동성위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외회표시자산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 등에 노출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전세계 주요 거래소 및 거래소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 국내외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 따른 시장위험과 동시에 외회표시자산(외국주식 등)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등을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문에서 제시된 수준 이외의 예상치 못한 수준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을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상세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 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 부분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등]

<전체적인 경기 전망>
2007년은 과도기의 한해가 될 것이며 미국은 그 역할을 여타 국가에게 넘겨줄 것으로 예상되어 지며 미국의 경기둔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기의 둔화는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GDP 성장을 5.8%에서 2007년 5.3%로 약간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은 3.2%에서 3.4%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로는 첫째,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2007년은 일본, 유럽 및 인디아를 포함한 이며장국가에서의 장기적인 투자붐이 시작되고 있고, 둘째, 중국의 경기조절과 유럽의 노동시장 및 신용성장을 통한 소비성장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불균형 해소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주요국 및 권역별 전망 및 시장 전망>

- 미국 : 성장둔화가 예상되나 경착륙은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경기의 비약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전세계 경기 성장을 이하의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유럽 : 개인소비분야가 되살아나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투자활성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본 : 지속적이고 강한 경기 상승 흐름이 예상됩니다.
- 아시아 전체 : 아시아 경제는 미국 주택경기에 일방적으로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7년 수출둔화가 미국의 경기둔화에 연계되어 큰 폭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흥국가 : 전년과 동일하게 지속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익률 자체는 지난해 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품시장 : 유가는 배럴당 약 65달러 선을 예상하고 있으며 금속가격은 미국 주택경기둔화와 중국의 투자억제로 인하여 하락주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농산물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 환율시장 : 아시아권 통화에 대한 달러 약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계적인 통화간축과 변동성의 증가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며장 마켓에서의 일시적인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 자료>

구분	REAL GDP growth		CPI inflation(%)		Interest rate(%)	
	2006F	2007F	2006F	2007F	2006F	2007F
global	5.2	4.5	3.2	3.0		
US	3.2	1.7	3.2	1.5	5.25	4.00
Japan	2.9	2.6	0.1	0.3	0.5	0.8
Euro	2.7	2.2	2.2	2.2	3.5	4.0
UK	2.6	2.6	2.3	2.2	5	5
Canada	2.8	2.2	2.0	1.7	4.25	4.0
korea	5.1	4.5	2.4	2.6	4.75	5.25
indonesia	5.3	6.0	13.2	7.0	10.0	9.0
australia	2.9	3.1	3.7	2.8	6.0	6.0
philippines	5.3	5.5	6.0	5.1	7.25	6.5
malaysia	5.8	5.2	3.8	3.2	3.8	3.8
Hong kong	5.1	3.5	2.2	3.1	4.4	3.75
singapore	7.5	5.5	1.0	1.0	3.5	2.5
S. africa	4.5	4.0	4.7	6.0	9.0	9.75
turkey	5.7	4.7	10.2	7.2	17.5	16.0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이며장마켓 포함)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서 주식투자에 따른 가격변동성위험과 외화표시자산(외국주식 등)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경우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한 상품분류상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위험은 이 펀드보다 주식편입비중이 낮은 혼합형 투자신탁이나, 채권형투자신탁, MMF투자신탁 등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높은 위험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은 투자자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일정부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등급표]

등급	등급내용	등급 기준
1등급	극히 높은 위험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에도 위험이 보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예) 자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펀드, 코스닥 전용 펀드, 아메리칸 마켓 투자펀드, 부동산개발 펀드, 원금의 전액손실이 가능한 장외파생 상품 펀드
2등급	매우 높은 위험	단기적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장기투자시 위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경우 예) 일반적인 순수주식형
3등급	높은 위험	2등급과 4등급의 중간 수준으로서 신탁재산의 상당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예) 주식혼합형 손실한도가 제한된 장외파생상품 펀드
4등급	중간 위험	단기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투자대상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장기투자시 손실의 회복이 거의 확실한 경우 예) 채권혼합형 등, 전준만기 5년이상의 채권형 펀드
5등급	낮은 위험	중장기 투자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예) 일반 채권형, 자수연계 채권형, 치약거래 추구형 등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변동성과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자산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경우 예) M&F

※위에 제시된 투자위험 수준은 이 투자신탁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된 것이며,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위에서 예측되어 제시된 위험수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기준가격 산정방법 : 공고일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 한 금액을 공고일 전일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자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2) 산정주기 : 매일 계산

(3) 공시시기 :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

(4) 공시방법 :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

(5) 공시장소 :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홈페이지 및 자산운용회사의 홈페이지, 자산운용협회 등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07.6.15)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운용자산규모	
최병로	44 세	본부장	17 개	1,962 억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 해외운용 : 한국투신운용 파생운용 : 플러스자산운용 해외 및 파생 운용 : 당시 05.5 월~현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대안투자본부 담당이며, 상기인은 이 본부를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해당사항 없음>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 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선후판매수수료	후후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구 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Class A: 연 1000 분의 7 Class C: 연 1000 분의 7 Class Cl: 연 1000 분의 7 Class I: 연 1000 분의 7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Class A : 연 1000 분의 9 Class C : 연 1000 분의 19 Class C1 : 연 1000 분의 0.3 Class I : 연 1000 분의 2.5	매3개월
	수탁회사 보수	Class A : 연 1000 분의 0.7 Class C : 연 1000 분의 0.7 Class C1 : 연 1000 분의 0.7 Class I : 연 1000 분의 0.7	매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Class A : 연 1000 분의 0.15 Class C : 연 1000 분의 0.15 Class C1 : 연 1000 분의 0.15 Class I : 연 1000 분의 0.15	매3개월
	기타비용 ¹⁾	연 1000 분의 2	
	총 보수·비용 비율	Class A : 연 1000 분의 16.85 + 기타비용 Class C : 연 1000 분의 26.85 + 기타비용 Class C1 : 연 1000 분의 8.15 + 기타비용 Class I : 연 1000 분의 10.35 + 기타비용	

주1) 기타비용은 회계감사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변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유사 펀드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2) 총보수, 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 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환헤지비용, 매매수수료는 상기 보수 및 비용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매매수수료 등을 포함한 비용비율에 관하여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부담수수료 예

[가정]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원)

투자기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 등				
Class A	288,500	665,500	1,042,500	1,985,000
Class C	288,500	865,500	1,442,500	2,885,000
Class C1	101,500	304,500	507,500	1,015,000
Class I	123,500	370,500	617,500	1,235,000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보수 전 순자산가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자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운용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변동,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므로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주식매매차익 등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년 1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국내의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증명,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등이 **비과세** 됩니다. 단, 해외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뮤추얼펀드, 리츠, ETF의 자분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성격의 특수목적회사(paper company ; 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상장주식의 배당금 등은 과세가 되므로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가 될 수 있음)

* 상기 세율은 정부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IV. 매입 · 환매, 분배

1. 매입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자금, 신분증, 도장(개인일경우 서명도 가능)을 지참한 후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익증권 매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입시 기준가격]

수익증권 취득을 위해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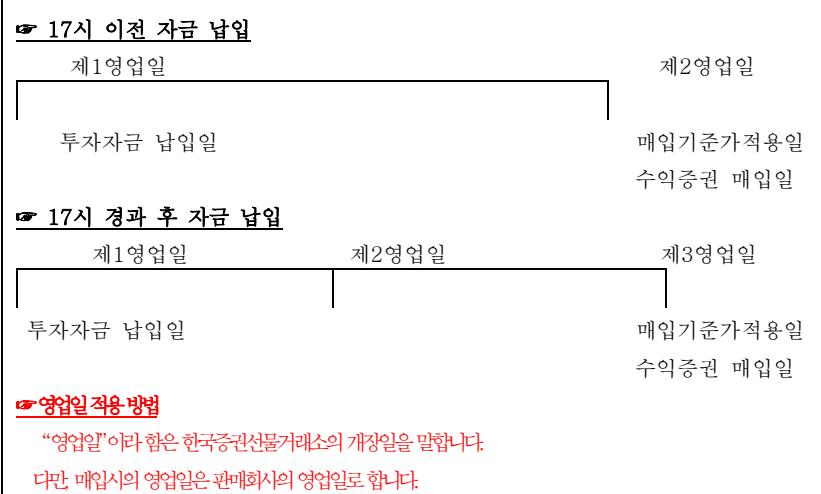
(1) 17시(오후5시) 이전 : 자금 납입일의 익영업일(제2영업일)에 공시되는 기준가격

(2) 17시(오후5시) 경과 후 : 자금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시되는 기준가격

(3) 단 최초 설정일의 판매가격은 1,000좌당 1,000원

(4) 매입청구 취소(정정) : 매입 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간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V.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환매방법]

수익자는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환매청구방법
수익증권을 판매사에서 매입한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영업점에 환매청구
판매사가 해신/허기취소/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환매청구
자산운용회사의 해산 등으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환매청구
실질수익자인 경우	판매회사를 통해 증권에탁원에 환매청구
현물보유수익자인 경우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

[환매시 기준가격]

환매를 청구한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17시(오후5시) 이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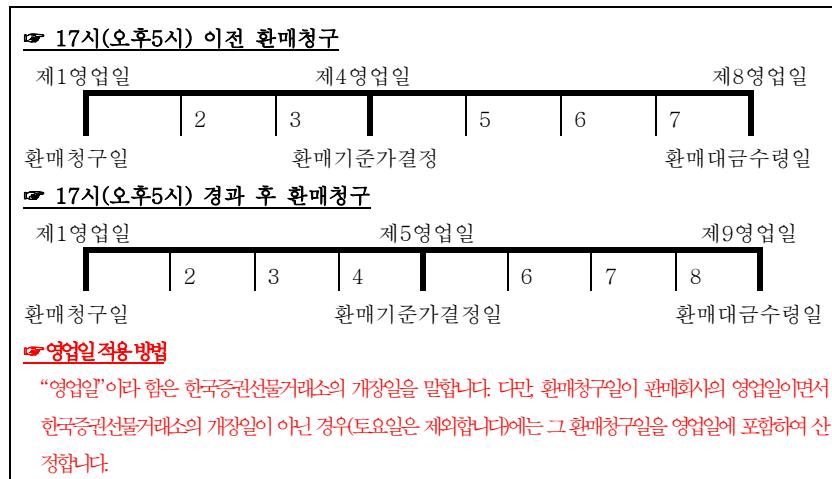
(2) 17시(오후5시) 경과 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3) 환매 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4) 환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나, 투자신탁 수익자의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간이라 힘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마수수료]

[수의증권의 환매연기]

[환매제한]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법과 선택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택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 환매 청구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구사진단 구역(승선)의 판매단번 주거지인 유의사항은 제2호. 구사진단구역 상세정보, IV.매입·판매 및 판매단번 유의사항 중 2.환매관련 유의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이익분배 원칙]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의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전세계 주요국가의 증권(Stocks), 선물(Futures), 상품(Commodities) 등 이 거래되는 각종 거래소(Exchange)와 거래소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관련 주식의 가치상승에 의한 수익추구전략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전세계 주요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의 주요 거래소를 당시의 자체기준에 의해 등급별로 선별, 해당종목의 투자비율을 결정하여 분산투자 효과와 함께 수익성을 제고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주식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 등의 위험 회피를 위한 환헤지를 통하여 이러한 종류의 위험을 억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특정지역 및 특정국기에 국한되어 투자하지 않는 펀드의 특성상 일부 외회표시 자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상기의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략이 반드시 유효하게 투자 목적을 실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투자시 유의사항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에 대해서 보장 또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된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투자위험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고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시지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과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업종의 환경 변화 등 기타 국제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국내외 주식, 채권 및 외환관련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하락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유기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국내외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래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회표시자산(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연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시지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및 외국주식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및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예탁증서(이하 "주식"이라 합니다.)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주식"이라 합니다.)
2. 채권 및 외국채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시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이하 "채권"이라 합니다.) -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또는 법제2조제7호디목의 외화증권으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채권"이라 합니다.) 단, 국내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외국채권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외국에서 발행된 사채권의 경우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기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3. 어음 및 외국어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기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합니다.)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어음"이라 합니다.)
4.자산유동화 증권 및 외국자산 유동화증권		4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합니다.) - 외국정부 또는 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합니다.)
5.금리스왑 거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간접투자 증권 및 외국간접 투자증권	투자증권 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간접투자증권"이라 합니다.) - 상장자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 자산총액의 100 분의 95 이상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 분의 95 이상 법시행령 제 164 조제1 항제1 호기록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자산총액의 20%까지 가능합니다.
7. 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8.장내파생 상품 및 장외파생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장내상품 포함) 및 장외파생상품(해외장외파생상품 포함).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은 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통화 또는 통화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15% 이하로 합니다.
9.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 분의 50 이하로 합니다.		
10.투자증권 치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11.고유재산 거래	법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26-12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제1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의 운용
- 주식 및 외국주식, 채권 및 외국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외국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외국어음,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창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신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표의 1. [주식 및 외국주식] 내지 5. [금리스왑거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 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인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조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합니다. 이하 이목에서 같습니다),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합니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자급 보증한 것에 한합니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합니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의 평가액 [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1월(매1월이 되는 날 전에 간접투자기구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5.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6.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기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피신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②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신탁약관 제37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투자신탁약관 제38조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③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은 투자신탁약관 제37조제1항제8호, 투자신탁약관 제38조 제1항제2호본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대상자산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 관별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증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날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합니다.)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 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가격

* 외화자산 평가관련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화자산 중 상장된 유가증권은(주식, 채권, ETF, 펀드 등) 당시가 그 해외자산을 편입한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시점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를 적용합니다.
-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자산운용협회와 환율정보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외국환증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재정매매기준율 및 최종 시가로 합니다.
- 국가별 매매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해외자산의 매매와 관련된 운용지사는 매매체결일을 기준으로 T+ 1일에 적용합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투자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증가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함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2. 장내파생상품거래

위 “1.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자금, 신분증, 도장(개인일경우 서명도 가능)을 지참한 후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익증권 매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입시 기준가격]

수익증권 취득을 위해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

(1) 17시(오후5시) 이전 : 자금 납입일의 익영업일(제2영업일)에 공시되는 기준가격

(2) 17시(오후5시) 경과 후 : 자금 납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시되는 기준가격

(3) 단 최초 설정일의 판매가격은 1,000좌당 1,000원

(4) 매입청구 취소(정정) : 매입 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간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잔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

2.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방법]

구 분	환매청구방법
수익증권을 판매사에서 매입한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영업점에 환매청구
판매사가 해신/허기취소/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환매청구
자산운용회사의 해신 등으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환매청구
실질수익자인 경우	판매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환매청구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현물보유수익자인 경우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
-------------	--------------------------------------

[환매시 기준가격]

환매를 청구한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17시(오후5시) 이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8영업

일에 환매대금 지급

(2) 17시(오후5시) 경과 후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3) 환매 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4) 환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나, 투자신탁 수익자의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간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 환매 청구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ㄱ.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ㄴ.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ㄷ.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ㄱ.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ㄴ.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ㄷ.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 호 또는 제2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합니다.

(가)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 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다)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으며,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합니다.

(가)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ㄱ.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ㄴ.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ㄷ.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금의 지급방법

-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나)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사유 및 절차]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내용을 판매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약관 제43조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원료된 때에 신탁약관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지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약관 제43조 내지 제45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 (1) 회사명 : 유리자산운용주식회사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 (3) 연 혁 :
 - 가. 1998.10 법인설립
 - 나. 1999.08 자산운용업 등록 (자본금 85 억) – 금융감독위원회
 - 다. 2000.03 투자자문업 등록 – 금융감독위원회
 - 라. 2000.05 투자일임업 등록 – 금융감독위원회
 - 마. 2007.04 현재 자본금 153 억

2. 주요 업무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 · 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업무의 위탁 : 투자신탁재산의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주와한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 (3) 업무의 위탁 관련 책임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업무의 외부 위탁과 관련된 책임은 본 업무를 위탁한 유리자산운용주에게 있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자산운용회사가 ‘(4)’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6)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단위 : 백만 원)

항 목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제8기 ‘06.03.31	제9기 ‘07.03.31	항 목	제8기 ‘06.03.31	제9기 ‘07.03.31
유동자산	9,644	16,734	영업수익	9,321	6,578
고정자산	2,701	3,662	영업비용	6,122	4,873
자산총계	12,344	20,396	영업이익	3,199	1,705
유동부채	673	1,336	영업외수익	13	207
고정부채	17	231	영업외비용	22	41
부채총계	690	1,567	경상이익	3,190	1,870
자본금	15,800	15,300	특별손익	0	0
이익잉여금	1,129	3,331	법인세차감	975	539
자본조정	0	0	전순이익	0	0
자본총계	16,929	18,631	당기순이익	2,215	1,331

4. 운용자산규모

2007년 5월 말 기준

(단위 : 억 원)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총계
수탁고	14,216	11,917	5,810	797	3,121	35,861

우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사항

소속	성명	나이	주요경력	비고
대안투자본부	최병로	1964년생	- 서울대학교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 - 한국투신운용 - 플러스자산운용	팀운용 총괄
대안투자본부	김용태	1967년생	- Univ. Manchester - 국제경제학 석사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 한국투신운용	운용
대안투자본부	강석훈	1974년생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 금융공학 석사 - 숭실대 산업공학과 - 농협CA 자산운용	운용

- 2007년 6월 15일 현재 대안운용본부 총 운용규모 : 17개 펀드 / 1,962억원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회사연혁
굿모닝신한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www.goodi.com	1973.04 설립 2000.07 랩(Wrap) 판매개시 2002.08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동양증권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 www.myasset.com	1962.06 설립 1996.03 수익증권 판매개시 2005.10 동양오리온투자증권 합병
농협증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1 www.nonghyup.com	1961.06 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 통합 1999.09 수신고 50조원 달성 2000.01 ISO9001 인증
부국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www.bookook.co.kr	1954.08 설립 1997.05 수익증권 매매업무 인가
부산은행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38 www.pusanbank.co.kr	1967.10 창립 2000.03 증권제휴업무 개시 2006.05 서울영업본부 개소
신흥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www.shs.co.kr	1955.07 창립 1996.09 납입자본금 550억
현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www.youfirst.co.kr	1962.06 창립 1999.03 Buy Korea 출시 2006.06 자기자본 1조5천억
SK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0 www.priden.com	1955.07 창립 2004.05. 투자일임업무 인가
키움디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www.kiwoom.com	2000.01 창립 2000.07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록 2004.04 코스닥시장 등록 2006.04 동경사무소 개소
리딩투자증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www.leadingkorea.com	2000.03 창립 2000.07 수익증권판매업 취득 2004.08 중국주식거래 개시 2005.04 일본주식거래 개시
한화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www.koreastock.co.kr	1962.07 창립 1986.11 증권거래소 상장 2003.03 중국 상하이사무소 개설 2006.12 기업신용등급 상향(A-)
대구은행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www.daegubank.co.kr	1967.10 창립 1991.09 종합온라인 실시 2001.08 사이버 독도지점 개설

우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www.hanabank.com	1971.06 창립 2004.02 중국 청도국제은행 인수 2005.05 대한투자증권 인수 2005.12 하나은행그룹 공시 출범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www.ibk.co.kr	1961.08 창립 1991.11 뉴욕지점 개설(국외지점 1호) 2003.12 증권거래소 상장
CJ투자증권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www.cjcyber.com	1989.10. 창립 1997.09. CJ그룹 편입 2004.08. 상호변경(제일투자증권→CJ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www.wooriwm.com	1969.01 창립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브릿지증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www.bridgefn.com	1954.08 대유증권(주) 설립 2005.12 본점 이전(서울 서대문구)

2. 주요업무

- (1) 수익증권의 판매업무(수익증권 모집 및 매출)
- (2) 수익증권의 환매업무
- (3) 수익증권 교부업무
-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5) 각종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제공 및 공고 업무
- (6)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

[의무]

- (1)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2) 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하고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4)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 (1) 판매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판매회사가 (1)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등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1) 명칭 : 한국씨티은행
- (2) 주소 :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
- (3) 연혁
 - 가. 1967년 9월 씨티은행 서울지점 설립
 - 나. 1987. 씨티은행 소비자금융업무 개시
 - 다. 1991. 씨티은행 VIP서비스를 위한 씨티골드서비스 개시
 - 라. 1983. 주식회사 한마은행 설립
 - 마. 1998. 한마은행 P&A방식으로 경기은행 인수
 - 바. 2004. 씨티은행과 한마은행,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및 한국씨티은행으로 사명 변경
 - 사. 자본금 : 13,099 억원 (2006. 10. 26 현재)

2. 주요업무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 (3)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 (1)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 또는 회사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회사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수탁회사는 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한 회사의 지시가 법, 회사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3) 수탁회사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4) 수탁회사가 (1)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탁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1) 회사의 명칭 : (주)외환펀드서비스
(2) 회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3) 회사의 연혁
 가. 설립일 : 2003년 4월 1일
 나. 자본금 : 25.5 억원

2. 주요업무

[의무 및 책임]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하거나 수탁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채권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설립일	2000.05.29	2000.06.20	2000.06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등록일	2000.07.01	2000.07.01	2004.06
연락처	02-399-3350	02-3770-0400	02-739-3590
자본금	50억 원	30억 원	55억

2. 주요 업무내용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1)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증권예탁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2)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신입합니다.
- (4)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2)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3)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 월간 비치 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 (1)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 및 이이분배금의 지급
 - 가.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상환금 등 의 지급이 곤란할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나. 수탁회사가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판매회사는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투자신탁의 해지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라.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가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1)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나. 기준기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1)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자산운용회사가 (1)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1)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회사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한거래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수익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기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유리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 (www.yurieasset.co.kr) 또는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기격표
 - 다. 법시행령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기준기격계산서
 - 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보고서]

- (1)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 보고서]

- (1)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에 의합니다.

[기타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사공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사공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사유
-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및 금융감독원장의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회사자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의관 변경]

- (1) 자산운용회사가 이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신탁약관의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표준신탁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나. 그 외의 사항 :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 (3)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나. 수탁회사의 변경
 - 다. 투자신탁기간의 변경
 -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의 설정시부터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본 신탁약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마.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바.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4)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 하여야 합니다.

(5) 수익자가 (2)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 또는 (4)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합니다)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수익자가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4)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의결권 행사]

- (1)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빌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인 경우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1호

에는 주총일 5일 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산운용하시는 주총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총일 5일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주총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총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총에서 행사한 의결
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_____

판매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O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 1 호의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 유리 글로벌거래소주식투자신탁 1 호의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 (환율변동 위험포함)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